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7. 8. 27 규정 제892호
전문개정 2007. 11. 23. 규정 제914호
전문개정 2010. 04. 28. 규정 제1097호
전부개정 2013. 11. 28. 규정 제1373호
일부개정 2017. 05. 15. 규정 제1677호
일부개정 2020. 09. 09. 규정 제19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과 동시에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민법교육을 통한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며, 조세법 및 조세정책·조세실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조세체제의 구축을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제2조(소재지)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개정 2013.11.28>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개정 2017.05.15.>

1. 조세법센터
2. 도시와법센터
3. 시민법교육센터

② 조세법센터는 조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연구 및 자료수집, 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③ 도시와법센터는 도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연구 및 자료수집, 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④ 시민법교육센터는 시민에게 보다 이해하고 다가가기 쉬운 법교육을 맡는다.

제4조(소장 등 임원 및 연구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기획연구부장 1인, 각 센터의 센터장, 5인 이내의 위촉직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둔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②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③ 기획연구부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기획·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④ 센터장은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센터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⑤ 연구위원은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1.28.>

⑥ 석좌연구위원은 법학분야의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력이 탁월하여 법학발전에 특히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20.09.09.>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원은 그 경력에 따라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② 전문연구원은 법학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 및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③ 연구원은 법학 또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직원 및 사무조교는 소장이 임명한다.<신설 2013.11.28>

⑤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은 소장이 지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신설 2013.11.28>

⑥ 사무직원 및 사무조교는 기획연구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구소의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11.28>

⑦ 연구원, 사무직원 및 사무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11.28>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기획연구부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교내의 관련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5.15.>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서울法學」과 「租稅와 法」을 발간할 때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11.28>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11.28., 개정 2017.05.15.>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1.28>

제3장 사 업

제9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1. 학술행사의 개최
2. 학술지의 발간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4.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의 수행
5.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제4장 재 정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신설 2013.11.28>

제11조(재원)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재원은 본교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연구용역비 및 연구 지원비,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11.28., 개정 2017.05.15.>

제12조(예산·결산) 소장은 매년 예·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11.28>

제5장 기 타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규정 제1097호, 2010.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3호, 2013.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77호, 2017.05.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51호, 2020.09.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